

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종욱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92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6. 11.

발 의 자 : 이종욱·서천호·이성권  
배준영·윤한홍·박성민  
엄태영·김희정·조승환  
송언석·김정재·박상웅  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, 그 결과 이용자에게 위해·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결함이 있는 경우 시설물의 보수·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노후 체육시설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나 안전 점검 수행 인력의 구성 및 자격에 관하여 전문가의 참여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으며,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기록·관리가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시 관련 분야 전문기술인을 포함하도록 하고,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도록 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4조의3, 제4조의5 및 제40조).



## 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건축·구조·설비 등 관련 분야의 전문기술인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④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위임받은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.

⑤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시설의 범위, 점검의 방법·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기술인의 자격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조의5제2항 중 “시설물의 보수·보강”을 “그 기간을 정하여 시설물의 보수·보강, 사용 제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보수·보강”을 “보수·보강, 사용 제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공개방법”을 “공개방법, 제2항에 따른 이행기간”으로 한다.

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,

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전점검 결과의 작성·보관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체육시설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체육시설 사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체육시설의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.





<p>1. ~ 7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<u>안전점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</u></p> <p>2. ~ 8. (현행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